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3月 16日(金) 10時03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3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3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3面

(10時03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 봄을 맞아 제109회 임시회 본 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니 무엇보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보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로 뿌리내리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하여도 많은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눈도 많던 한겨울 추위도 이제 물러가고 올해도 벌써 3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사업을 매진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절기를 지나 해빙기를 맞은 지금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및 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많은 인명 피해를 주고 간 홍제동과 세곡동 사고 사건은 예방과 안전점검이 미흡했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에는 이러한 재난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는 많은 안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가 우리 구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안전들이니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の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2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 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이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 심사를 본 위원회에 접수된 조례(안) 7건을 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0時08分)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안녕하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서울의 관광환경 개선 및 국제적인 도시로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의 일관성 및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여 온 가스시설 및 난방시공업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어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오던 가스시설 시공업 업무가 '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에 통합되었으므로 전문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신설했으며, 생활복지국 분장사무 중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청의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계획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정계획 근거는 서울시에서 2001년 1월 17일자로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현재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부서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이며 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광고·간판·전단류 등 광고물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며,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등이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광고물 전수 조사 등입니다.

기구조정 계획은 현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광고물관리팀으로 조정을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는 당초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의 업종구분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보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문건설업에 보면 27호에 가스시설 시공업 외 3종이 전문건설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시설 시공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 및 가스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처리부서의 일관성 및 법 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제10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 중 제5조에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은 물

론 주민의 불편 부담사항을 줄이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조례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 제한을 입찰관련 예정가격 등으로 투명하게 구체화하라는 국무조정실의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0년 9월 28일 제2회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정하도록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재정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의 제한범위 중 제5조제2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과 제5조제4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알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공개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된 제5조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업」을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제5조제3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공개제한 대상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구의 재정운영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임의로 공개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며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1/4분기에 예산 등 8개 분야, 4/4분기에 결산 등 8개 분야를 매년 2회 구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주민의 알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 공개의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사유 중 1호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2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을 삭제하며, 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입찰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며,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민공개 제한사유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삭제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규입니다. 심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있어 연대보증인 설정 및 용자금 반환사유 중 일부가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정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2항 “연대보증인 설정”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연대보증인 기준에 의해 구청에서 선정한 연대보증인이 대부업무를 맡고 있는 한빛은행의 요건에 맞지 않아 은행에서 재선정하는 사례가 현재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 지정한 연대보증인이라는 의식으로 체납관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신청 시 첨부하는 연대보증서를 폐지하고 한빛은행과의 계약정을 통해 대부와 체납관리를 직접 맡고 있는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은행측의 적극적이며 철저한 체납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제1호 “용자금의 반환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실적의 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주민에게 규제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용자금 대부신청시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는 1명,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상환기한 전 용자금 반환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입니다. 기금 총액은 10억 5,900만원이며 이중 미회수금은 7억 8,700만원으로 용자금이 6억 4,400만원이고 체납금이 1억 4,2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 조례상 기금용자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할 때 조례의 규정에 맞는 연대보증인을 1명내지 2명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에 대한 재산 및 생활실태 파악을 하고 용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및 위탁은행에다 통보를 하고 이때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 여부, 보증인 적정 여부 등 은행 자체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구청에 대한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대하를 해준 다음에 은행에서 용자를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상환기한 전 용자금 반환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두번째는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세번째는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네번째로는 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

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로 되어 있으나 첫번째 항목의 규제내용이 주관적이며 비현실적 이므로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용자금 대부분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은 체납 발생시 원만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이를 삭제하고 수탁은행 자체의 대출요건에 맞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경우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위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에 의거 대부분금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결손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손부담이 없는 수탁은행에서는 기금 관리에 다소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조례시행규칙 제7조(기금관리의 위탁)에 보면 맨 후미에 사후관리된 대부분금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결손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종전의 약속대로 10분씩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제일 먼저 우리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에게 몇 가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 원서공원에서 행자부가 주관한 조기 청소 행사시에 거기 지역출신인 새마을회장 동 부녀회장까지는 인사소개를 했는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 인사소개가 없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洪起瑞委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3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행자부 직원들이 조기청소를 원서공원에서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구의 직원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독자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회원들을 독려해서 일부가 참여했고 저도 구청장님과 같이 현장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주최는 행자부에서 주최를 하고 사회는 행자부 총무과에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청장님하고 저하고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회원, 그리고 李炯述議員님이 오셨는데 행자부에서 소개를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와서 고맙다고 하고 회장소개도 하고 그렸습니다.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언제든지 구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구의원님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는 쪽으로 굳어가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도 구청장님하고 저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소개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 회원이 왔다고 소개했고 구청장님께서 북촌마을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李炯述議員님이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고 칭송하셔서 박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에서 주관하고 조정하는 것은 구의원님의 예우를 사실상 신경 쓰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구에도 공문이, 참여를 원치 않는데 단 관할 지역에서 행사를 하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우리 李炯述議員님 인사소개를 했군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래서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洪起瑞委員 사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委員長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가뜰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의원님들 예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이 주관하는 그

런 행사가 아니고 어느 단체주관으로 하는 행사 때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사례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국장님께서서는 과장이나 각 동장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로 나와서 일을 하시는 의원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됩니다. 어제든 바로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 문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예우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어떤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 참석해 봐야 몇 분 참석 안 합니다. 그것을 몰아서 '의원들'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의원님들 소개를 해 봐야 일이 분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長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서는 운영위원장님의 자격으로 그런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각별히 우리 의원님들 위상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입니다. 각 과장, 각 동장 회의시 다시 한 번 의원님들 예우에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보다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직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도 있을 겁니다.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고 저희들도 거듭 이러한 친절이라든지 특히 전화친절에 대해서 전 직원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東奎 고맙습니다. 우리 洪起瑞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長님!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長입니다. 구정업무에 노

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던 가스시설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주무팀입니까? 지역경제과의 가스시설업무팀이 주무팀이냐고요.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연료계가 주무팀입니다.

○劉燦鍾委員 '9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통폐합되었다고 하는데 이제사 다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분장사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가 광고물 정비업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의 일관성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자치행정은 구의 자치행정하고 공통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금년 1월 17일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의 조정을 부구청장, 시장 회의 때 협조요청해서 현재 이 정비업무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물팀 직원 9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일원화시키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劉燦鍾委員 여태까지 도시관리국에서 했던 일이 일관성이 없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이관했습니다.

○劉燦鍾委員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도 그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일관성있게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劉燦鍾委員**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국 과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의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劉燦鍾委員** 여기 와서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우리 구의 방침을 정할 때 그것은 내부조율로 듣지 여기에서 우리 기관의 내부협조는 이 (안)이 구청장 의견이니까 구청장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구청장 (안)일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조례개정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그런 사항은 일단 구청에서 심의를 하고 국장급에서 조례(안)이 확정되고 거기서 검토가 되면 구청에서는 간부나 밑의 업무조율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의회에 구의 간부가 온다는 것은 구청(안)을 경원시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관련 과와 협조하고 의견을 듣고 국장회의를 거치고 조례 회의 때 과장, 국장들이 결정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劉燦鍾委員** 해당과의 주무팀이 있을 텐데 해당과의 주무팀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사고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분장사무가 구로 이관되는 부분이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劉燦鍾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劉燦鍾委員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의유가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또 생활복지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넘어간 업무는 '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통폐합한다고 개정의유가 되어 있는데 월드컵이 오고 각종 행사를 대비한다면 진작부터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논쟁을 부리며 개정을 해야 되는지, 또 개정하는 이유 중에서 이 상태로 두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런 행사로 인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지, 또 '96년 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진작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논쟁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날 서울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와 관리부서 이관계획에 따라서 시·구간의 업무 일관성 유지와 공조체제를 위해서 특별히 시장이 구청장, 부구청장 간부회의 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월드컵 경기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광고물 정비 관리부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의 조정협조에 따르기 위해서 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시와 자치구간의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 상태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을 담당해도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 자치구간의 업무 일관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그래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꼭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따라할 필요는 없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광고물이 구청에서 2만 6,000여 건입니다. 물론 적법 광고물이 1만 6,000건, 불법 광고물이 9,942건인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어라이

트나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각종 공공시설 이용간판 또 교통이용 간판 등 아주 많은데 현재 정부나 시에서 보기로는 현재 이 체제로는 이것을 정비하는데 다소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의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일정기간을 뒤 가지고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된 그 자체가 저 자신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부담되는 행정입니다. 전부다 하나를 칠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오는데 오늘 아침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급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라고 공포를 하고 신문에도 냈습니다. 불법광고물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옛날에

○宣相善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와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갔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나 자치행정과나 틀릴 것이 뭐가 있어요? 조례개정하게 되면 단속이 되겠습니까? 단속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광고물 정비는 옛날 과장시절에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다 이 업무를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 이 조례개정(안)하고 약간 벗어나는 질의입니다마는 광고 같은 것은 보다시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0%가 불법광고물일 겁니다. 허가 광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도 문제가 있어요.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 처음으로 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를 시킬 때 우리는 먼 단위로 다 했습니다. 몇 면이 되든 간에 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그렇게 했던 것을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이 다른 구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잘 징수하기 위해서는 타구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지금 불법광고로 놔두고 있는 것이 허가광고보다 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가면 가스 이런 것이 편하게 됩니까? 오히려 업무가 더 많지 않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건설관리국 굉장히 복잡한 곳으로, 전문건설업이라고 해서 간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것도 '96년 12월에 됐으면 그때 빨리 시행을 하지 5년째 되는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委員長 李東奎 지역경제과장을 오라고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는 내용에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볼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을 오라고 하세요.

○宣相善委員 지금 종로구의 가스공급이 70에서 80% 사이라고 하는데 가스는 지역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이 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LNG,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인데 도시가스회사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해요. 어떤 메리트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고 해야 함에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宣相善委員 예, 답변하십시오.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연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연료판매 허가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업무, 수급조절에 대한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했습시다라는 가스시설시공업이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같이 건설관리과에서 업종등록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많고 적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건설관리과에서는 등록만?

○總務課長 李東明 업종 등록만 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기금총액이 10억 5,914만 2,000원이네요. 그 중에서 융자금 체납금 포함해서 7억 8,734만 2,000원이 미회수가 되는데 체납금은 전혀 못받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금 1억 4,000여 만원은 현재 89건에 대한 체납액수고요. 위탁기관인 한빛은행에서 어떤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희도 작년에 일제히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려고 했습시다라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한빛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지금 이것도 빨리 받아야 되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에 보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놔둬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인정될 때는 반환사유가 되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가구주뿐만 아니라 생산업체, 소득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융자가 가능한 기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

잖아요?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까? 모든 것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래서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도 없네요.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직접적으로 크게

○宣相善委員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시간을 좀더 드렸는데 묻던 것을 계속 묻는 것은 잠시 후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웃거나 하지 마세요.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체납관리를 맡고 있는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선정토록 하여 은행측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또 이쪽에 보면 만약에 수탁 금융기관에서 결손이 나더라도 부담을 안 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과의 협약은 '97년도에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맺었습시다라는 쌍방 합의 하에 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수탁기관이 어떤 책임을 안 진다는 조항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은행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죠. 당연히 이것이 검토 개정이 되어야지 만약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불리하면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들 이권만 챙기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은행들이 부실대출이 많은데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부실대출을 해놓고 나서 우리 구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문

제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수탁기관하고 재협약을 해서 이것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명심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宣相善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수금, 즉 체납금 1억 4천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한빛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관리 일체를 은행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체납관리를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옛날에 은행에서 체결을 안하고 우리 구에서 집행했던 것도 은행에서 체납관리를 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이 조례가 '96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어 가지고 '96년 상태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액 은행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은행에만 맡기기에 못하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회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지금 현재 '97년부터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을 했죠? 위탁계약을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위탁을 '97년도에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97년 이전 것 '96년도나 '95년도의 체납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체납관리를 해줄 의무가 없는데 체납관리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97년도 이전 사항은 별도로

○洪起瑞委員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것까지 떠맡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 이전 체납금이 얼마가 돼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2월 28일 현재 1억 4천

○洪起瑞委員 아니, 1억 4,284만 2,000원은 전체 체납금이고 우리 구에서 집행했던 체납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

이후 '97년부터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했으니까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다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고 '96년도나 그 이전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체납금을 받아들이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천2백여 만원에 대한 체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97년 이전 액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여기서 못받을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결손날 부분이.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다고 사료가 됩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洪起瑞委員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들이 참 너저분하게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요. 잘 빠져나가는 데 애꿎게 '하숙생, 구함'이라든가 '사글세방 구함' 이런 것은 3분의 1 정도 이만큼 붙여놓고 전주에 붙였다고 해가지고 고발 당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 받고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벌금을 20만원씩 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명륜동 지역이나 학교 주변 같은 데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번에 마침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행정관리국으로 마침 이관이 된다면 학교측이나 이런 데에 협조를 해서 학교 주변에 지정계시판을 몇 군데씩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해준다면 이런 서민들의 피해자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주변에 어떠한 유동 광고물 불법 침지물 관계는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한 곳에 지정계시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이 사실 하

숙생 하나 구하려고 해도 그것이 법이 묘해 가지고 경찰에 가서 조사 받고도 또 송치되어 가지고 검찰에 가서도 조사 받고 또 벌금이 나오더라구요. 다른 사항은 출두를 안 하더라도 과태료로 때우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그래서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주변에 게시판 몇 군데만 설치해주면 이런 피해자도 없고 또 지역도 깨끗하게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참고를 해서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잘 검토 하셔서 실수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崔康洵 幹事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우리 劉燦鍾委員, 宣相善委員님, 洪起瑞委員님이 질의하신 불법 간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서, 국장님! 지금 현재 몇 %가 허가제고 몇 %가 무허가제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에서 파악한 광고물이 한 2만 6천 건 되는데 적법 광고물이 1만 6천 건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9,900여 건 정도 됩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육칠십%는 허가가 나와있네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런데 무슨 80%가 무허가 간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80%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은 하루가 다르게 자꾸 늘어나는 이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9,942건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3월말 중으

로 자진 시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자진 시정하기는 커녕 일부에서는 더 첨가되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올린 대로 불법광고물 정비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마찰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구에서는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센티브로 우수 구에 대해서 10억을 걸고 하는데 10억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따면 못 따는 데서 책임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도 부담이 가게 되고 해서 상당히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崔康洵委員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3층에다가 무엇을 하나 차렸는데 허가를 안 냈다고 아침저녁으로 올라와서 괴롭혀 가지고 허가를 안 내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팔았지만, 또 한 군데에다 작년 9월달에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낼 때 광고허가를 내면서 점용료를 내가 물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5개월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崔康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판에 대해서 실측을 해봐야 제가 답변이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 당초의 허가면적보다도 실측을 해보니까 도로점용이나 이런 면적이 좀 많아졌다 커졌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건 실측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것이 직원들이 말이죠 구의원 집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열 번도 더 재어 간 간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수장사를 하는 식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내가 용납이 안 가서 내가 오늘, 어제도 알아보고 오늘 고지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예 고지서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나왔는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이렇게 매겨가면서 다른 사람들, 허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씩씩 해가지고 봐주는 건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 불만스러운데 이것이 마침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행정관리국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를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 저한테 와서 하는 식으로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무허가간판이 하나가 달릴 수가 없고, 또한 돌출간판은 단속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행정업무의 처리를 업무 이관이 위원님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자진해서 간판을 달도록, 관에서도 임의로 개수를 조정한다든지 규격을 재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주민이나 구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지금 앞에 상가들은 말이죠 뒷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내와 가지고 영업을 못하고 몇 개월 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무허가 간판이 되어버려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구청에서 복리 행세야. 1년에 간판에 세 번을 추징금을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 번 바뀌면 세 번 다 허가를 다시 내야 되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여기에서 구청에서 그 간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저희들이 일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의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일률로 현재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광고물 사전준비 단계로 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말까지는 주민들한테도 예고를 하고 해서 자진정비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에 들어갑니다. 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참고해서 주민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받아봐서 위원님들한테 고견을 수시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崔康洵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崔委員께서 하신 말씀대로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광고물계가 거기로 넘어갔으니까 崔委員님 말씀대로 행정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썩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썩씩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본 건과는 무관한데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누누이 의전 문제 때문에 항상 운영위원회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국장님께서서는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항상 그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절 문제라든지 전화 친절하받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는 간부회의나 집합교육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또한 특별교육으로 해서 강당에서 친절의, 운용의 묘를, 미소짓는 것,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전 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한 친절도우미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각 과장들이 사무관급 이상들이 직접 교관이 되어서 이렇게 미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예우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교육을 하는데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오고 나서 저는 그런 것을 자부합니다. 진짜 의원님들 예우에 관해서는 많이 교육을 했는데 직원이 1,400여 명이 되니까 그 중에서 아직도 저 자신도 목이 뻗뻗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고치도록 하고 그래서 27일부터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하고 저 자신도 받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목이 뻐뻐할 때가 있어요, 불친절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그런 집합교육이라든지 3월 27일부터 60명 단위로 해가지고 파트로 한달 내내 이런 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친절이라든지 미소를 짓는 내용은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해도 어느 정도 따라갈까 말까 하지 약간만 틈새만 있으면 나태하고 본연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한다는 나름이지, 단 직원들의 애기들도 옛보다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 의견도 그렇다고 자부를 하는데 혹시 앞에서 말씀하신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라 해도 구에서도 초청을 안하는데 혹시 새마을지도자 몇 분 오라고 해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려고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쪽에서 행자부의 소개가 구의원님들 소개를 안해서 청장님이 그것을 감지하시고 북촌마을에 대해서 머리가 다 회어지셨다고 그래서 칭송을 하고 박수를 하고 했는데 물론 사회자가 칭송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 자체에서 자생단체에서 할 때는 우리가 혹시 손이 갈 때는 다 예우에 신경을 쓰는데 임의적으로 초청을 받을 때 이것은 미처 우리도 그 계획도 모르고 참가할 때는 부득불 있었다, 그렇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되었다고 해도 우리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또 반복해서 교육을 해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이나 누구를 보더라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1,400여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교육을 할 기회가 없으신지 아니면 과

장님들이 같은 팀에서 아침에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는 기회만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처럼 숙제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누이 저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왜 그것이 시정이 안될까 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과장님들이 팀에서 미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주시면 서로가 편할 텐데 그리고 어차피 친절교육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좋습니다. 해서 그런 과정 때문에 종로가 친절도 1위라는 그런 명칭도 받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앞으로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물론 주민들한테도 더욱더 잘하셔야 되겠지만 의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마음을 가다듬고 국장님께서도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팀에서 아침에 미팅을 할 때 회의할 때나 저녁에 미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인사를 해서 나쁜 것이 없으니까 서로 예우하면 베푸는 사람이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받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상기하셔서 다음 기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회의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친절서비스라든지 주민만족도 최우수구 표창은 사실 구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구의원님들이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에서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받았는데 진짜 저희들은 예전보다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고, 단 이러한 전화 친절히 받기라든지 주민을 친절하게 대하기에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격하더라도 주민들이 격해도 지침으로 차상급자, 민원실에 혹시 다투더라도 거

기의 최고 책임자가 가서 안내를 해가지고 일단 커피도 대접을 하라 이런 지침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잘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칭송을 해주신다 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만의 하나 100%에서 부족한 0.2%를 보충하자고 하는 어떠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거의가 잘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평가를 받는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종로구청 직원들이 되는 계기를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泰淳委員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도 안했는데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해가지고 시간을 다른 쪽으로 끌어가려고 한 것 같은데 현안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예리하게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奎委員長, 崔康洵 幹事와 司會交代)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항상 보면 조례 개정을 하고 뭐하고 개정을 해놓으면 될 해. 시행을, 집행들을 안해, 한심한 거야. 광고물도 나왔지만 단속을 하면 정리가 됩니다. 또 주차단속도 그래요. 거주자우선 주차제도 아침에 어느 한 군데 가서 얘기하고 왔습니다마는 이 집행을 안하는데 이런 것을 개정해서 될 합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지금 불법 광고물을 집중단속 관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에 대해서 애매해서 제가 묻습니다. '96년인가 '97년인가 조

례를 개정했습니다.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재산세 3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둘, 5만원 이상 내는 사람은 한 명 이렇게 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96년인가 '97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체납이 1억 4천, 이것은 별것 아니겠습니까마는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연대보증인을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을 2명을 삭제한다고 해요. 그러면 먼것번에는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3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은 두 명, 5만원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은 한 명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3,4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애매한 게 은행과 재약정을 해가지고 체납관리를 은행에서 하게끔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서민들은 더 대출을 못해. 왜? 은행이 지금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할 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선별을 해주니까 은행에서 체납관리를 안 하니까 은행 자체에서 보증인이나 이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대출을 해주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런 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국민소득 수준이 낮을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회수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재생, 살게 하기 위한 바탕으로 쥐가지고 특별하게 회수하는 데 큰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정상적인 안정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회수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개혁 차원에서 은행하고 어정쩡하게 우리가 5만원 이상 한 사람, 3만원 이상 두 사람 받는 것보다도 은행에서는 은행 나름의 여수신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신용이 있는 분한테는 그대로 보증을 안 해도 되니까 구태여 이중 삼중 여기에서 재산세 5만원 이상 한

사람하고 3만원 이상 두 사람 해가지고 또 다시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은행에 가서 여수신 관리의 그 규정에 맞도록 신용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도장만 찍으면 되고, 인감증명도 필요 없이, 그렇게 고치자는 얘깁니다. 옛날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으로 상당히 못 먹고 살았으니까 먹고 살도록 준 겁니다. 그래서 회수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신경을 쓰려고 아까와 같이 5만원 이상 보증인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체납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하고 우리 관리하고 3만원 이상 두 사람, 5만원 이상 한 사람이 은행하고는 안 맞다, 은행에 맞도록 보내는데 구에서는 또 이중 부담을 두면 안된다 그래서 그러면 구의 것은 없애고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玄壽漢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이 좋다고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이 신용이 좋은 거예요. 은행에서 평가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불량자가 되는 거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거래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이렇게 해서 우선 회수 목적으로 해서 보증인 두 명을 세우기로 조례를 개정해놓고 이것은 왜냐, 한 사람한테 오래 줄 수도 없고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람, 없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보안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삭제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보증인 적정 여부,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준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금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해서 재약정을 하기 위해서 대부나 체납관리를 직접 은행에 맡기겠다는 걸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없는 사람들이 얻어 쓰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은행에다 맡겨버리면 은행에서 하건 말건 우리는 돈 몇 억 자금 10억, 20억 갖다줘놓고 은행에서 하라는 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구에서도 챙겨야죠. 금

리 자체가 5%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일반 시중에서는 10%

○玄壽漢委員 5%고 10%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은행에 딱 맡겨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지만 은행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단 신용이 좋으나 나쁘나 그것만 챙기니까 그것이 애매해서 이것을 왜 개정을 해가지고 하느냐, 한번 개정한 것을 적어도 5년이나 몇 년 시행도 안해보고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개정해서 이런 것만 자꾸 반복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심의를 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데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면 재산세를 내고 거기에서 보증인을 두 사람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보증을 하는 것을 또 이것은 안된다 이런 보증은 은행 패턴에 맞춰 가지고 다시 보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중 부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구청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은행 여수신 관리에 맞춰서 하면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玄壽漢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崔康洵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玄壽漢委員님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길만 돌아요. 핵심은 질문을 하지 않고, 핵심은 내가 얘기하죠. 선거 때가 되어갑니다. 선거 때가, 선심행정의 표본이 됩니다. 이게 규제 개혁위원회라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 국무총리실에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이것은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선심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결손이 되고 안되고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결손금이 생기더라도 은행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

○千相旭委員 그렇게 되어 있죠? 수탁은행에서는 약정서 제6조제1항에 의해서 결혼금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은행에서는 사람을 봐가지고 기본 나쁘면 보증인을 두 명, 세 명 막 세우라고 하고 좀 이쁘게 보이면 무보증으로 대출 나갑니다. 무보증으로 나가는 경우에 결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안 져요. 결국 우리 종로구청의 자금만 구청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 개정을 왜 합니까? 원래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개정(안)이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개정(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정해서 구청에서 손실을 본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가 개정했는데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2항의 재산세 관계는 저희들이 '96년 3월 개정 때는 저희가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받았습시다라는 어차피 약정서에 의해서 수탁은행에서 체납관리를 할 바에는 또 은행의 일반적인 추세가 재산관계 유무로 여신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것을 개정을 하고 약정서에 수탁은행이 책임을 안진다는 그 규정을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千相旭委員 개정이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千相旭委員 그것을 먼저 개정을 하고 와서 이것을 상정해야지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구청의 간부들이, 맨날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됩니까?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15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는데도 20조는 행방이 묘연하고

그래도 은행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행한테 무엇을 믿고 돈을 맡깁니까? 또 손실부담도 주지 않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절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합니까?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부의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이것을 개정해 주면 우리 의원들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자금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세 유무로 해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침부해서 은행에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자체 여신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니까

○千相旭委員 李秀傑 課長이 유능하시니까 우리 위탁기관과의 약정서를 말입니다 개정해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康洵 千相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100% 지당한 표현입니다. 선행이 되어야 되고 타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업무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가는데 자치행정과가 신생과죠? 새로 생긴 과인데 동기능전환에 따른 일환으로 새로 기구조정에 의해서 생긴 과인데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실패작입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밀바닥의 심부름꾼인 구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실패작이거든요. 원래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축소론에서 폐지론으로 가다가 갑자기 장관이 바뀌면서 기능전환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보니까 유능한

과장이 그 과로 가셨는지,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지침하고 맞물려 가지고 과거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는 것인데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는 그 팀이 전부 자치행정과로 가게 됩니까? 직원들이 다 갑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허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가서

○**金正大委員** 인허가만 갑니까? 관리 즉 적발 같은 것도 갑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관리도, 그 팀 9명이 넘어오는 거죠.

○**金正大委員**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할 일이 참 많은 곳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동 기능 전환에 대한 모든 일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만 해놨지 동사무소 작은 데는 말만 이룸하여 기능전환이지 사실 얘기 두세 명 보는데 얘기 늘어나 책상 몇 개 들어내고 만들어놓은 곳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수십억씩 들어서 동청사를 몇 군데 짓고 있는데, 맞죠? 어제도 교남동 동청사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가지고 있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正大委員** 서울시 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서울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 17일날 구청에 권고를 해서 구청장들도 따르겠다는 협조가 되어 가지고

○**金正大委員** 구청장들이 따르겠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신생으로 생긴 과라 거기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그곳으로 보낸다, 직원들을 그리로 보낸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각 동을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한 1년 동안 걸어놓은 것도 제가 봤어요. 너무 먼지가 끼고 때가 끼고 정말로 흉물입니다. 주요 4대 일간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광고물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되는지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金正大委員** 거기에 대한 지침서랄까 규정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있습니다. 오늘 인허가 업무가 넘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의견도 받들고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보면 정말로 먼지가 피뢰피뢰하게 묻어 가지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면 업무가 넘어오니까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金正大委員** 지금 그 도시계획과 직원이 넘어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래도 위원님들이 모르시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金正大委員** 너무 골목이 지저분해요. 전부 진것줄하고 케이블줄이 거미줄처럼 진짜 거미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학원이다 태권도 학원이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플래카드가 1년 넘게 걸려있는 것도 내가 봤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앞으로 업무가 넘어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래서 이것은 업무 중에서도 단속하는 직원들이 사오 명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관리 전체 직원은 오륙 명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전체 9명입니다.

○**金正大委員** 9명이 다 자치행정과로 갑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22명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9명이 가면 31명이 되네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하여튼 이것이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각 골목 정비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알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崔康洵 幹事, 李東奎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李東奎**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을 오전에 끝낼까요? 아니면 오후까지 할까요?

(「오전에 끝내죠」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핵심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례개정(안) 중에서도 광고물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제약을 받아서 질의를 다 못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우리 종로구가 과거의 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할 때 면당 해가지고 굉장히 부과율이 많았어요. 당시 타구를 보니까 우리 구보다 훨씬 싸게 광고물 도로점용료가 됐다. 그런데 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없겠습니까마는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가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마 시에서 비디오로 보고 그랬는데 종로가 많다고

○**宣相善委員** 종로도 많고 다 불법광고물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시장 앞에서 비디오 상영하는 것을 보니까 종로가 문제성이 많다고 봤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정비업무를 맡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철거를 하면 마찰이 생기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마찰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宣相善委員**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과연 얼마나 잘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광고물을 소위 허가를 낼 수 있는 소위 대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면 불법광고보다 훨씬 비싸게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로 하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가를 내서 광고물을 달겠느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불법광고물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수준을 허가하는 광고액을 내려주면 전부 허가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구 세수증대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秀傑 課長님! 현행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행정과장이 할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당연히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허가광고물이 불법광고물보다 과중한 돈을 더 납부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은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더 부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점용료 관계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진짜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으로써 불법광고물도 줄어 들고 그 다음에 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때가 돼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애, 지금 보십시오. 밖에 내놓은 간판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기 건물 앞에 물건 내놓고 그 앞에 간판 내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우리 사람이 편하게 다녀야 할 도로에 전부 적재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평소애 李秀傑 課長께서는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평소애 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라인을 그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테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부수고 깨고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종로구민들하고 얼마나 더 부딪혀야 할지 불상사가 안 일어난다고 안할 수가 없어요. 깊이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아

침에 무엇을 이뤄내려고 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접근해 가면서 우리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5조2호,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이 있다는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공개의 제한이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판단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데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조금 다를 때, 모호할 때

○**宣相善委員** 어쨌든 간에 공익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공익에 저해되는 것을 삭제하면 안되죠. 분명히 공익에 저해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2호는 그렇고 그 다음에 4호도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국가나 구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을 꼭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공익이라든지 저해하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어지간한 것은 거의 발표를 하라는 뜻입니다.

○**宣相善委員** 공익을 우선시 해야 되는데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이런 재정운영 상황도 흐름을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것은 포괄적으로 공익이나 주민들에게 저해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꼭 터보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오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기본취지는 개정이유가 행정의 투

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물론 여러 가지 규제완화나 이것은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니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사실 일반 자치구에서도 어지간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은 투명성있게 하는데 외부나 상급기관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예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현재 이러한 내용도 국무조정실의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어지간한 것은 공익이나 주민들에게 저해된다 이런 말을 아예 안하고 오픈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아까 제가 질의하다 못마쳤는데 이 체납금 1억 4,200만원, 그런데 '97년 이전에 체납된 내역을, 그리고 체납액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체납된 채로 놔두는 건데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를 짧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핵심만 짧게 해주십시오.

劉燦鍾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劉燦鍾委員** 오전은 몇 시가 오전입니까?

○**委員長 李東奎** 좋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도 저는 관계없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

○劉燦鍾委員 劉燦鍾委員입니다.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소득지원 대상하고 생활안정기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종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사업장이 우리 종로구에 소재한 경우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큰 저소득 주민인데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의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기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학자금도 생활안정자금 기금에서 나갑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이 대상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연리가 5% 정도 됩니다. 이자가

○劉燦鍾委員 그런데 6조2항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삭제하게 되면 체납에 대한 채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되는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앞으로 여수신 관리로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면 대부신청관련이 강화된다는 뜻인가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강화되지는 않죠. 그래도 되는데 연 이자율이 일반 금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보통 11.5% 되는데 이것은 5%이니까 100만원 받으면 한 4만 4,000원 정도로 아주 쌉니다.

○劉燦鍾委員 기금 기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잔고가 2억 8,200만원입니다.

○劉燦鍾委員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이 앞으로 대출과 관련해서 쉽게 봐서 앞으로는 채권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왜 그러나 하면 주민들한테 아까 재산세 5만원에 한 사람, 3만원 두 사람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수신 관리에 그 보증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이중 피해가 되어서 아예 없애고 1차적인 것을 없애고 그것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여수신 관리는 더 철저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지금 劉燦鍾委員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도 제대로 안됐고 질문도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반대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劉燦鍾委員 무슨 반대질문요?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지금 이 조례(안)이 본 위원이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위탁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약정서에 6조1항에 보면 은행에서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게 되어 있다고요. 책임을 안지는데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던 말이야! 내용이 지금 반대로 되었는데 질문을 똑바로 해야지 답변도 똑바로 해야 된다 말이야! 이 내용을 지금 반대로 해석했던 말이야! 질문한 내용이나 답변한 내용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약정서를 먼저 바꿔와라, 6조2항을 먼저 개정해 오면 이것을 수정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개정(안)이 무엇을 개정하고자 하느냐 하면 말이지 6조제2항이 뭐냐 하면 보증제도가 되어 있는데 보증제도를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폐지하겠다, 삭제하겠다는 말입니다. 삭제해 버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대출하느냐 하면 보증인 없이도 무조건 대출해 주는 시대라 말이지 은행이 지금, 그래서)

○劉燦鍾委員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채권자가 최종적으로 누가 되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行政管理局長한테 질문을 하는데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은행에서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던 말이야!)

○劉燦鍾委員 예.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어요. 안 지게 되어 있는데 질문을 그렇게 하고 답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질문도 잘못되고 답변도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잘 보고 약정서를 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나갔는데 또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 하니까 잘못된 내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劉燦鍾委員 잠깐만요. 委員長님! 정리 좀 해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도록 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하면 되지 뭐 대단한 것이라고 두번 세번을 봐요? 이 부분이 6조2항에 대해서 보증인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증인 없이 대출이 나가면 채권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은행에서는, 앞전에는 구청에서 했으면 은행에서 요식행위로 해서 그냥 사인을 하면 보증인 한두 사람 세워서 대출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손실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누구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보증인이 없으면 임의로 해서 대상을 선정해서 대출이 나가면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은행에서 책임진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여긴 책임 안 지도 록 되어 있어요.)

○劉燦鍾委員 그래서 내가 답변을 듣는 것 아닙니까?

(○千相旭委員 議席에서 - 안 지게 되어 있다가.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약정서를 먼저 개정해 오면 이 조례를 심의하겠다 그 말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잠깐만 주세요. 지금 劉燦鍾委員께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千相旭委員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이 안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실 때도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이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劉燦鍾委員님!

○劉燦鍾委員 조금 전에 그 부분에서 결손부분이 애매하게 처리된다 실질적으로 부실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기금도 대상선정도 심사속고해서 선정되어야 되지만 또한 기금관리 사후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짚어서 질의한 것 아닙니까? 삭제가 되면 보증인이 삭제되는데 삭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보니까 은행에서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책임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구청장인데 나중에 체납으로 인해서 부실화될 염려가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조례가 잘못되었다 그 얘기에요. 조례 내용이, 그 얘기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委員長 李東奎 잘 알겠습니다. 劉燦鍾委員님! 질의 마치셨죠?

○劉燦鍾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00分 會議中止)

(12時2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
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
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금일 조례개정
(안) 중 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서울특별
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
례증개정조례(안) 중 제6조2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용자금 대부분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
을 경우 기금결손 발생시 구의 재정손실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
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 부칙을 「이 조
례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
서 제6조제1항을 개정한 후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東奎 千相旭委員의 의사일정 제3항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千相旭委員의 의사일정 제3
항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수정동의(안)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
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
의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千
相旭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와 증식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34分 會議中止)

(14時0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
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관
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
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
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
出)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
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
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
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
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
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
합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
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 그리고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4조제3호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후단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에게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설치계약 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를 명시하여 장애인들이 장기적인 수입을 보장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 및 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 시 구비서류 중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설치계약 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계약신청서류 중 장애인수첩과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는 구청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그리고 순국선열유족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조회함으로써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동판매기 운영회사 등에 무단 전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조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조례 시행상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 및 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금번 임시회에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사적 재산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제5조 부대시설,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 유지·관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화장실 개방 및 표지부착 조항은 삭제하고, 제10조제2항 및 제4항은 관련조항의 삭제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변기나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 화장지, 비

누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문 및 정비사유를 살펴보면 제5조 부대시설 설치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7조 관리인의 지정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일탈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관련규정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벗어나는 사유로 폐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 유지·관리기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입니다.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중 1항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고, 제10조제3항은 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을 조례에 실은 예로 폐지하고 주민들의 양식과 필요에 맡겨야 한다는 사유로 폐지하고, 조례 제11조 시설점검 규정은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 아니라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청결히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체 관리방안 등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규제사무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 중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기술적이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로써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업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정화시설이 규칙 제15조, 제21조 및 제53조의 기

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정화시설이 규칙 제53조 및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關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며, 규칙 제21조(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입니다. 또한 규칙 제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며, 규칙 제9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에 별도로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내용인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의한 정화조 설치기준의 부적합 여부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식별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규칙 제53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와 제9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또한 청소업자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이를 다시 조례에 존치 또는 신설하는 것은 규제개혁 정비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배치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확정되어 규제사무로 분류된 내용과 2000년 8월 6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사무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시 배출 3일 전에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배

출 3일 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0조제3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협조사항 중 추상적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1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동일규정이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조례 제14조의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에서 년 1회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24조의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게시판 부착 의무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규제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집수리, 소규모공사 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제사무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2월 2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규제사무로 분류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 전”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배출 3일 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5톤 미만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 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 시 고려할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가 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3일 전” 신고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3일 전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주민 대부분이 배출 시에 신고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배출 3일 전”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삭제하여도 시행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톤 미만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되겠으며 배출방법은 신설조항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를 배출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접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 7월 22일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 삭제입니다. 이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 1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횟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1회 이상으

로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2회 이상 점검할 수도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봉투판매소에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신설되어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를 통하여 운반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방식대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도 있는 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방법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질의한 그러한 내용과 같이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님을 비롯한 관련 직원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종로가 아름다운 종로에서 행복이 샘솟는 종로로 만들기 위해서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ISO 9001 인증 획득까지 하고 최우수구로 각종 부문에서 버금갈 만한 향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종로는 정말로 과거의 모든 금자탑을 세웠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원인은 지금 쓰레기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종로구가 여태 고생해서 모든 부문에서 이렇게 타구로부터 우리 종로구가 정말로 모든 부문에서 우리 구를 최고로 만든 구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곳곳의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담당 혹은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宣委員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특히 창신·송인지역 그리고 명륜3가동 지역에 대해서 용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영하던 때와 같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宣委員님도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 때 수준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청소가 용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확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또 계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계도로 하고 해나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용역을 주든 어쨌든 간에 우리 종로구 내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 종로구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성을 줄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단투기를 했다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주민들 속에서 쓰레기는 무단투기를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지역 곳곳을 찾아서 기동반을 통해

서 치워주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모아지면 열 개가 되고 열 개가 모아지면 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제 출신 동인 송인동도 있고 여타 여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도 종로가 하루아침에 민심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기에 주민들의 호응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강화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행정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조례를 강화해서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폐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 1회로 조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횡수를 줄이고 완화를 하고 삭제를 하지 말고 더 강화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조례 제2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2회에서 3, 4회로 물론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완화 차원보다는, 저희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횡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원활하게 쓰레기가 처리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12월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할아버지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정말로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 않으니깐 골목골목에 조그만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 이런 할아버지제도를 도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안) 중의 하나에 들어갑니다. 좋은 (안)을 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무단투기를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무단투기한 지역의 반경 50m면 50m 그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유인물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홍보를 하고 또 대로변 같은 데는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도 역시 그런 식으로 무단배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50m 범위 내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하도록 하는 그런 홍보문제, 그리고 청소할아버지 문제 이런 몇몇 (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이 되면 그때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여하튼 그 동네 곳곳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될 쓰레기도 하지 않고 해서 곳곳에 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나와서 자주 치웁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안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장소를 알려줬음에도 아직 치우지 않은 곳이 송인동만 해도 몇 군데 있습니다. 무단투기하는 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신동, 송인동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이 자체를 모르고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설사 또 모르고 해서 버려졌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신경을 쓰고 1,2개월 동안 수시로 점검하면서 치운다면 그 후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별도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시간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다음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는데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특히 생활복지국 청소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비까지도 예산에 들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도 않고 시행착오만 계속 겪고 나날이 주민의 불만만 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위원님들한테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종로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현재 243명입니다.

○鄭泰淳委員 우리가 청소구역에 대행기관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대행기관으로 넘기게 되면 그 인원은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노조가 있어서 줄이지도 못하고 그 쪽으로 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원을 새로 뽑지 않는 것이 '98년도부터 청소원 신규 채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해 가지고 1년이면 약 20여 명씩 정년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는 수만큼 저희가 용역을 하고 또 지금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

는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용역을 주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로 청소원들을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그 숫자가 전부 필요없고 한 것은 아닙니다.

○鄭泰淳委員 대행업체에 주기 전에는 전체 종로구가 전부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에.

○鄭泰淳委員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종로구 전체 청소구역에 대행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10개 동을 대행하고 9개 동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9개 동이 직영입니까? 10개 동을 대행으로 하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에.

○鄭泰淳委員 그런데 그 때 당시 인원에 비해서 10개 동을 넘긴 지금은 청소원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전부 직영을 했을 때 최고 500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개 동을 떼어주고 지금 정원은 246명이거든요.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렇게 줄이는 대신에 기존 지역에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저희가 전부 치워야 되고 또 가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대행을 줬어도 대로변에는 저희가 청소원을 배치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에서 인원을 본다면 물론 장비도 현대화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때 수에 비하면 청소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鄭泰淳委員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이 물론 노조가 있어서 직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일하는 근무여건을 보면 환경미화원들

이 흑사를 당한다고 해서 기관에다 민원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인원을 노조가 있어서 절대 손댈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은 채 위탁하는 것이 능사라고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인원대로 240명이 존재하고 있고 청소구역은 거의 50% 이상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이 있어서 작년의 의원님들 몇 분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이 어떤 모델이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율성 차원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운영되는 것은 오로지 봉투만 팔아서 자기들이 수익을 남기고 자기들이 처리를 다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제로 현실과 안 맞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요. 또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노조가 설립되면서 또 본인들도 직영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실제로 어떤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무단투기했던 것도 다 치워주면서 알게 모르게 주민들이 격려를 해주고 자기가 대충 버린 것도 잘 치워주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대행업체에 넘어가면서 그런 현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원문제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무조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무조건 버렸다고 안 치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쓰레기인데 우리가 치워줘야 될 부분이지만 대행지역이라고 안 치워서 우리 미화원보고 가서 치우라고 그러면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쪽 동네일 게네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더 서비스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뽑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주겠다 법적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심지어는 최근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하고 노사합의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솔직히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이 「자치구 실정 여건에 맞게 환경미화원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미화원 노령화도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 뽑아서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서울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사합의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하고의 사이에서 알력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노사합의 사항하고 대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운영이나 서비스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담당 계장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킬 때 옛날 같으면 환경미화원한테 이것 좀 해라, 물불 안 가리고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외의 일을 근무시간 외에 시키려고 하면 심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시켜야 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선을 합니다. 대행업체한테 굉장히 부담을 줬던 재활용품 운반까지 시키고 대형생활폐기물도 이것은 보통 생활쓰레기작업보다 가외로 일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이번 3월에 전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 사실 직영하는 곳은 주민들 민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행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민원이 발생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 직영 미화원들에게 균형을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설득해서 전격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점들, 실제로 생활에서 느껴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 환경미화원 운영상의 효율성은 나름대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꾀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주민만족 부분과 효율적인 운영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뤄나가기가 실제로 쉽지 않은 문제지만 나름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과장님 답변 중에 새로운 인력을 더 뽑으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못뽑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243명이 있는데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을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새로운 인력은 저희들이 전 인력이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뽑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노령화되었고 빠져나갔다고 대형업체에 마구 맡기기도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전 구가 정년퇴임하고 나면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鄭泰淳委員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왜 길게 하지 말라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번 해봤어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장소인 줄 알아요?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렇게 하면 질의 하나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왜 그런 자리는 한번 갖지도 못하고 이런 장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려고 해요? 한번이라도 의원들 모셔 가지고 그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될 테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다음 질의하실 분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우리 鄭泰淳委員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하고 용역하고 차이점이 많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부분을 좀 고지대 쪽으로 변동하고 고지대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용역업체에서도 수익금이 나오니까 청소량이 빨리빨리 치워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확대는 못하지만 그 부분적인 것은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건이 좋은 곳을 용역을 주고 고지대 즉 여건이 나쁜 데를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무리하게 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洪起瑞委員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활복지국에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용역업체에서 일하기 쉬운 지역만 딱딱 집어가지고 군데군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전에는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적으로 한쪽씩 경계를 뒤서 쥐야지 용역업체가 일하기 편한 곳만 이곳저곳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용역을 쥐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 중에서도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언젠가는 전 지역이 용역으로 가야 될 것이다, 용역 제도라는 것이 비용절감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지역을 다시 바꿔서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고지대 지역에서 살아보시라고. 이 쓰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얘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데 대체가 쓰레기 때문에 지탱을 할 수가 없단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준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부촌에다 용역을 주고 어려운 지역의 서민들은 직영을 해서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긁어주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고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실제적으로 부촌 같은 데는 무단투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준이 높고 상류층이기 때문에 다 갖추고 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고지대에 있는 서민들

은 봉투 하나 사는 것이 아까워서 무단투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무리 개선을 하고 뭐를 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끌 이유 없이 하루속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방법을 세워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창신동 꼭대기나 명륜동 꼭대기에 와서 주민들 반상회 때 여론 한번 들어봐요. 뭐라고 하는가, 지금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종로구라고 하니까 아름다운 종로구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러운 종로구 만들고 있는데 무슨 아름다운 종로구냐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개선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아무리 어렵고 혼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대책을 안 세우고 금년 여름을 맞이하게 되면 집단민원으로 구청광장에서 진치고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옵니다. 두고 보세요. 속히 정책을 수립해서 정원이 243명이나 되니까 정 안되면 직영하는 지역에서 이삼십명 정도 빼 가지고 용역하는 데가 모자라면 이삼십명이라도 파견근무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봐요. 용역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딸딸이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다녀요. 한 사람이 밤새 다녀봤자 몇 군데 다니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목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로변에 있는 것만 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그래요. 지난 일요일날 쓰레기봉투를 5만원 어치를 사서 무단투기한 것을 치웠는데 아마 차량 두 차분을 다 실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가보면 다시 영망이에요. 도대체 구의원이 쓰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들볶여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지 밤낮 부촌에만 특혜를 주고 서민들이 사는 고지대에는 계속 쓰레기더미에 파묻혀 죽으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국장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에는 우리 예

산을 들여서라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몰래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몇 사람만 과태료 물었다는 소문만 나게 되면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아무리 예산절감이다 뭐다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산은 쓸 때는 써야 되고 우선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지금도 민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내가 청소과에 전화하는 것만 해도 이들에 한번 꼴은 할 거예요. 나도 전화하기가 민망해서 못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2급 이상인 자가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먼저 저희 구에 신문복권 판매대나 식음료 자판기에 대해서 아직 2급 이상 장애인에게 저희가 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해 놓기 위해서 한 건데 별척조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 작성 시에 이런 위배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해지한다고 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규칙에다 들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니, 계약서 상에

○洪起瑞委員 이것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빙자해서 그런 것만 대행해서 하는 것이 비밀비재합니다. 장애인을 팔아 가지고 노점 같은 곳도 해서 위탁료 얼마 받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하게 되면 장애인을 이용한 업자가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용도변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용도변경을 해야, 인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일반음식점은 일반주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란주점이나 유희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정화조 용량을 키웁니까? 보통 가정집은 정화조 용량이 15인용 아닙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한테 용량 조희가 오면 용량을 확인해서 그 건물에 맞는 용량을 확인해서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용량을 늘리도록 해야죠.

○**洪起瑞委員**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95년도인가 정화조 특위를 할 때, 조사할 때 보니까 용도변경할 때 정화조 용도변경을 안 키우고 용도변경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도 되지만 근린생활지역으로 하다보면 인원이 많이 드나드니까 용량이 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 용량이 안 커진 상태로 용도변경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용량이 커진 상태로 용도변경이 되고 있는지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아마 그 사안이 특정지구 자체가 용도변경인지 건축물 자체만의 용도변경인지는 구분이 안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용도전환일 때는 정화조 용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택 자체가 정화조 용량을 키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洪起瑞委員**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자체가 되더라도 집단적으로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정화조 용량을 키우는 조건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용량이 적어 정화가 제대로 안되면 오수가 그냥 흘러나갈 것이 아니겠어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다루는데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할 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洪委員님 의견처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그것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할 때 용량이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을 대해해나가려면 그것은 실제적으

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洪起瑞委員**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崔康洵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요 매점이라는 것은 가로 가판대를 말씀하십니까? 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점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구내식당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 내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안의 매점이라든지 그런 매점을 새로 만들어서

○**崔康洵委員** 그러면 그것이 장애 2급 장애인이면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장애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법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저희가 위탁한 곳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崔康洵委員** 그것이 언제부터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왜냐하면 우리 창신동에 2급 장애인이 오래 전부터 자꾸 그렇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그 분은 꼭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러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이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 같은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할

때는 우선적으로 崔委員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동대문에는 물론 종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로가판대 거기에 종로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그려놨는데 동대문 거기에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안 그려놔서 없어요. 그것을 얼마 전에 건설교통국장이 호랑이 한 마리 그려놨다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지나가며 봐도 그것은 고양이 새끼지 그것을 호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가가 없는지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동대문에는 너무 종로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게 종로에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서울시에서 지시를 내렸다는데 지금도 보면 가로등이 쌍등을 켜놨어요. 동대문만 들어서면 가로등이 외등에다 가변으로 켜있고 또 요즘 지봉로 길이라고 해가지고 지봉로 길은 보안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로등이 대낮처럼 환해요. 그런데 사람 다니는 숫자를 본다고 하면 동대문 쪽은 하루에도 100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지봉로 길은 불과 한 10만명 왔다 갔다 할까 이 정도로 차이점이 많은데도 지금 동대문 문밖에만 나가서면 종로하고는 완전히 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로가판대가 종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崔康洵委員 가로등은 여기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종로와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매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을 심으려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기왕 나온 말에 제가 몇 말씀드리는 거예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崔康洵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崔康洵委員님이 지금 질의한 중에 2급 이상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2급 이상이라는 것은 됩니

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1급, 2급을 얘기합니다. 2급 이상이라는 것은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3급, 4급, 5급은 이하로 들어가는 거고 2급 이상은 1급까지 들어가는 것을 2급 이상이라고 한다는 겁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중단했는데 우리 종로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6개소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14개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직영을 해서 관리합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는 직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직영을 하면 우리 구청 소속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환경미화원 소속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는 용역도 있는 걸로 알고 일부는 저희 기능직이 나가서

○洪起瑞委員 아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슨 취로사업이다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공원 외 여기야 우리 미화원 관리인들이 나가있으니까 정확하게

잘하겠지만 공원 내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공원녹지과 하고 관계가 또 떨어져있겠지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 기 때문에 저희도 서로 협조를 해서

○洪起瑞委員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지 괜히 설치만 해놓고 청소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 정화조 청소를 정화조 대행업자가 하고 있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으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샘플을 몇 군데라도 점검을 해보고 있나요? 그냥 업체에서 하는 대로만 두고 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부분이 지금 청소가 끝나고서 실제로 청소를 잘 제대로 본인들의 영수증에 몇 l라고 써준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로 샘플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직원 한 명이 워낙 관리를 하다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정말 직접 샘플을 다는 못 받아도 몇 군데는 샘플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정화조를 했다고 하는 최근 것을 바로 가지고 그때 샘플을 받아보고 특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는 것을 실시해보려고 합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대행업자한테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기 좋은 물만 훑어가고 밑에 있는 찌꺼기는 그대로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화조 청소를 하나하나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를 하더라도 밑에 찌꺼기를 다 긁어내야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 있는 하기 좋은 물만 걷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정화조 안을 주인들이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의 직원이 한 명이 관리를 하니까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미화원들이라도 한 두 분 정도라도 해서 샘플을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청소를 했는가 아니면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시정명령을 띄우게 되면 조치라도 해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 정화조 청소를 하나하나 똑같은 거예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토론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줘야 청소하는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서 폐기물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차량이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으로든 가능합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법인 소속으로 된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용이지 자가용 개인차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다 등록을 하고 폐기물사업 영업허가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허가등록이 없는 데에서도 모든 것을 치우고 있잖아요? 개인도 하고 있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렇지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보면 개인이 거기에다 폐기물 차량이다 써 가지고 다니면서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들도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혹시 뒤에 조그맣게 리어카 식으로 달아 가지고

○洪起瑞委員 아니, 큰 4톤짜리 차에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건설폐기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洪起瑞委員 예, 건설폐기물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록된 업체에 있는 소유 차량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라도 거기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하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요건이 있습니다.

업체도 차량 두세 대 정도만 있어도 간단하게 수집 운반 정도는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하고 건설시공업자들이 처리 업체한테 이전해줄 때는 그 차량을 사용해도 됩니다.

○**洪起瑞委員** 건설업체 차량을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도 관계가 없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물론 매립지까지는 안 가고 중간처리업체한테까지는

○**洪起瑞委員** 중간처리업체한테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자가용도 관계가 없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 정도까지는 규제를 이번엔

○**洪起瑞委員** 왜 그러나 하면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재수 없는 사람이 자가용 영업행위로 적발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개인이 트럭 용달차 같은 것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건설업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洪起瑞委員** 예를 들어서 모래가게 같은 데서 하는데 원래는 자기가 신축하는 현장의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의 것을 실어다 주다보니까 거기에도 잘 하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동네에서 밭보인 사람들은 그것이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벌과금을 내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 얘기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것은 위법이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洪起瑞委員** 자가용으로도 하는데 법 조항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영업용으로도 하느냐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 차이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대항업체까지 가는데는 어떤 차량이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차량은 거기에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은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고 모처럼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적발되어서 벌과금 물어서 민원이 되어서 들어오는

사례가 있더라 얘기지.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것은 아마 거의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하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洪起瑞委員** 버리지는 않았는데 다만 자가용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예, 이상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장장 일곱 개 부분의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을 가면 물론 잘 되어 있는데도 있고 청결하고 깨끗한 데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참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담배꽂초도 있고 보기 흉할 정도로 악취는 엄청나게 나고 이런 공중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시기에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중대한 국가의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많은 부분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나라의 도덕으로 봐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도 宣委員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해주시고 저도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살려서 이것이 꼭 구민에 대한 규제보다는 우리 관공서가 일을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부분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요새 시대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것을 폐지시켜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도 수궁을 했지만 이것이 국무조정실에서 전반적인 법체계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조례에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정해놓는 것은 입법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 선언적이다 이런 이유로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서 폐지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

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공중화장실이나 기타 화장실 부분은 서울시나 또는 전 국민적으로 벌이고 있는 청결운동에 부합하여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도 추진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제하는 안을 결국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끔씩은 들립니다마는 저녁 때에 한번 저도 들어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시로 들르려고 하지만 저녁에 추울 때인지 들어갔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난방시설이 되어 가지고 훈훈해요. 그리고 각종 시설물도 깨끗이 접수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들어갔기 때문에 다 봤는데 다른 대변기에는 화장지가 있는데 한 군데만 화장지가 없더라구요. 그런 것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가 옛날에 생각하던 공중화장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노숙자들이 공중화장실에 와서 저녁에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인사동에는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우리가 옛날 화장실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어요.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고속도로의 휴게소 화장실이나 어디를 가도 정말로 어떤 데는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치도 잘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음악도 나오고 참 좋은데 그와 반면에 우리 종로구 같은 데는 더군다나 노숙자들이나 질서를 좀 문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중화장실은 참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에서 전면 폐지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데 화장실은 더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종

로구의 공중화장실은 몇 개를 관리하고 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청소행정과에서 6개, 고정식 시설 건물식으로 된 것까지 38기 정도의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과장님은 그 공중화장실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나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이런 조항에 대해서 폐지를 해도 아무 관계없이 잘 깨끗이 청결하게 화장실이 사용이 되겠는가 판단을 해봤어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런 부분들은 범보다도 요새는 더 소모품이나 이런 비품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나 내부적인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작년엔 저희들이 3등을 하게 된 배경에도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에서 타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된 것이 폐지된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닐 때 담배꽂초나 이런 것은 발견된 데가 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자들이 이제는 이 정도 도덕과 질서가 잡혀있으면 되겠다고 판단이 섰어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이용자 부분에서는 솔직히 실망도 했습니다. 인사동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박카스 병을 대변기에 내려놔서 다시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뚜껑을 떼어가고 불과 10분에도 담배꽂초가 쌓이고 하는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법은 이용자에 대한 규제 쪽이 아니라 시설 운영 관리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할 것이고 우리 시설 제공자 쪽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이용자도 관리 입장인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담배꽂초를 버리면 누군가가 잘 치워서 깨끗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관리인은 계속 두겠습니다. 지금도 두고 있고

○宣相善委員 여기에 관리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인 지정이 폐지된다는 건데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관리인을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宣相善委員 그러면 폐지가 아닙니까? 일부 존치를 한다든지 해야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공공기관에서 사실 관리인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삭제 하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이 조례상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리인을 안 둔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관리인을 안 뒀을 경우에 그것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공중화장실 있으나마나 하다고 당장 이사하라고 하지요.

○宣相善委員 여하튼 관리인을 두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다 폐지시켜도 우리가 공중도덕을 잘 지켜서 나가면 1등 국민,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걸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더 잘 지키고 더 좋은 우리 종로구 더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나하나가 잘 개선이 되고 거기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철저히 담담국·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점검을 하시고 과연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이런 것은 담담으로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27分 會議中止)

(15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0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時48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東奎 崔康洵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晔宅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清掃行政課長 鄭倫漢